

취미우표통신판매 장기보관금 환급청구안내 및 국고귀속 공고

취미우표통신판매 이용고객 중 잔액이 소액이어서 우표류를 발송할 수 없는 이용자에게 예납금의 추가 입금이나 환급청구토록 안내하였으나 계속이용 및 환급청구가 없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한 금액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정당한 권리자는 아래기간 내에 예납금 잔액에 대하여 환급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건 수 : 총 35건 (목록별첨)
- 공 고 기 간 : 2017.09.25. ~ 2017.10.10.
- 환급청구기간 : 2017.09.25. ~ 2017.10.10.
- 관련문의부서 : 서울성북우체국 영업과 우편팀
(☎ 02-3396-0130)

※ 14일간의 공고기간이 통상적이나 추석명절 및 국가임시공휴일 일정을 고려하여 게시함.

상기 환급청구기간내 청구가 없는 금액은 『우편업무편람 제2편 제5장 제4절 우표류의 관리와 판매』 규정에 의거하여 국고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17.09.25.

서울성북우체국장